

# 營業祕密保護制度의 導入과 企業의 對應

—改正, 不正競爭防止法 草案을 중심으로—



特 許 廳  
調 查 課 長  
黃 義 昌

## 1. 머리말

近代 世界經濟史를 보면 60년대에는 美國이 世界經濟를 제패했고 80년대에는 日本의 경제공격이 세계를 휩쓸었으며 90년대에는 유럽이 挑戰하는 時代에 들어 섰다.

이러한 가운데 先進國들은 世界經濟를 석권하기 위하여 自國産業의 保護를 위한 貿易障壁을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技術開發規制 움직임을 具體化(技術開發規制法)하면서 新技術 確保에 혈안이 되어 있다.

또한 先進國들은 技術등 노하우를 축으로 한 世界經濟市場 장악을 위하여 분주히 뛰고 있다.

美國의 세계적인 컴퓨터회사인 IBM과 獨逸의 최대 회사인 「지멘스」는 컴퓨터 칩의 美·獨 同盟을 맺었고, 日本의 거대한 재벌인 「미쓰비시」그룹도 獨逸의 다이플러벤츠 그룹과 提携, 日·獨 동맹 체제를 구축하는 등 外國의 大企業들은 世界市場 분할점거를 위해 전략적인 연대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같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는 産業競爭社會에서 競爭國家나 競爭企業體 보다 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技術 노하우등 事業活動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營業上의 祕密情報을 누가 먼저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企業의 成敗가 좌우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情報의 開發이나 管理, 保護 등에 대한 認識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인 것 같다. 이는 營業上의 祕密情報을 손쉽게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營業祕密 情報이 일과성이나,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았기 때문에 營業祕密 情報에 대한 管理技法 등의 開發 필요성이 그리 절실한 것으로 認識되어 있지 않았던 것도 또한 간과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技術革新과 經濟社會의 情報化, 서비스화 추세에 따라 營業祕密은 양산되어 가고 있고 그 유통량도 늘어 가고 있으며, 특히 고용인구의 빈번한 移動, 산업스파이 事件의 증가등으로 祕密情報漏出에 대한 危險意識과 함께 그 保護의 열망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등 營業祕密의 위상이 크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현상이다.

## 2. 營業祕密이란 무엇인가?

營業祕密이란 事業活動에 있어서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開發, 축적한 祕密情報로서 生産方法등의 技術上 祕密 뿐만 아니라 판매전략 등의 商業上 祕密도 포함하여 企業祕密, 財産的, 情報, 産業祕密 또는 노하우라고도 한다. 그러나 從來의 노하우는 일반적으로 技術上의 祕密情報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소위 産業스파이가 노리는 技術上, 商業上의 情報은 모두 營業祕密로 보아도 좋을 것인 바, 技術情報에는 設計方法, 設計圖面, 工程圖, 실험데이터, 性分原料의 配合比, 強度計算의 運用방법, 햄버거의 調理方法, 코카콜라의 향내는 방법 등이 있으며 商業情報에는 顧客의 리스트, 거래선의 루트, 新製品의 生産計劃이나 販賣計劃, 판매매뉴얼, 製品의 할인 시스템 등이 있고 기타 經營情報로서는 人事·組職·事務管理技法, 財務·金融 등 財産管理 方法 및 資料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非公開性)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經濟性 즉 財産性),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祕密로 維持, 管理되고 있고(祕密性) 그 營業祕密이 事業活動에 利用될 수 있는 情報(利用性) 일 경우에는 營業祕密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營業祕密은 特許權 등 無體財産權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法律의 特性을 살펴보면 첫째, 營業祕密保護制度는 그 개발정보의 祕密性 維持가 요체인데 반하여 特許制度는 그 發明, 考案의 公開가 요체이다. 따라서 營業祕密 保護制度는 侵害行爲를 前提로 하여 이를 規制함으로써 얻어지는 反射的 利益에 불과하나 特許制度는 公開를 댓가로 獨占的, 排他的 權利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營業祕密保護制度는 祕密情報이 公開되지 않는 한 즉, 그 祕密性이 유지되는 한 영구히 獨占行使할 수 있는데 반하여 特許制度는 일정기간 즉, 존속기간내에 한하여 그 權利를 행사 할 수 있을 뿐이다.

셋째, 營業祕密保護制度는 特許權, 著作權 등 현행 知的財産權制度로 保護 받을 수 없는 것 까지도 보호 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特許制度는 特許請求의 범위내에서만 權利가 인정되어 保護 받을 수 있다.

넷째, 營業祕密保護制度에서는 營業祕密 保有者에게 祕密維持의 책임이 있고 公示制度가 없어 제3의 善意의 取得者에게는 對抗 할 수 없다. 따라서 法的 保護의 側面에서 보면 特許權보다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반면 營業祕密은 그 祕密性을 특정시한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祕密性이 존속되는 한 계속 保護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特許權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것도 營業祕密 保護對象이 될 수

있어 營業秘密保護制度和 特許制度는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다.

### 3. 營業秘密保護는 왜 필요한가?

최근 技術革新과 經濟社會의 情報化推進에 따라 技術上 또는 商業上의 노하우등 營業秘密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그 거래 또한 활발해지면서 타인의 營業秘密을 도용(산업스파이 事件 등) 하는 등의 不正行爲의 危險도 增大하고 있고 對外的으로도 이와같은 營業秘密의 知的財産에 대한 適切한 保護를 하려는 움직임이 GATT/UR등의 國際交渉으로 推進되고 있으나 現在 우리나라의 現行 法體制에서는 이와같은 無形의 知的財産의 營業秘密에 대한 保護가 國際的으로 보아도 반드시 충분하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적절한 保護制度의 마련이 不可避하여 現行 不正競爭防止法을 改正하여 營業秘密 保護 規定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이 營業秘密을 法으로 保護해야 할 필요성을 살펴 보면

첫째, 營業秘密의 開發, 蓄積에는 상당한 시간 및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만일 다른 知的財産과 마찬가지로 營業秘密이 適切하게 保護되지 않을 경우 企業들은 스스로의 研究, 開發努力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開發, 蓄積하기 보다는 正當한 댓가의 지불없이 他企業의 營業秘密을 도용하거나 無斷 使用하는 손쉬운 方法을 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他企業의 營業秘密을 도용하거나 無斷 使用하는 기업이 스스로의 研究·開發努力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開發·蓄積한 會社를 逐出함으로써 惡貨가 良貨를 構築하는 結果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이와같이 產業界의 흐름이 바람직하지 못한 方向으로 흐르게 되는 現狀을 豫防하고 기업간의 健全한 競爭秩序를 통한 產業競爭力 向上을 위해서 營業秘密을 法的으로 適切하게 保護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둘째, 產業界의 創作活動의 산물인 營業秘密이 완벽하게 保護되지 않을 경우 企業의 새로운 創作活動의 동기를 약화시켜 결국 技術開發이 위축되고 營業

秘密 情報의 蓄積이 阻害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技術등 노하우의 開發에 所要되는 長期的 投資가 수포로 되는 結果를 가져와 關聯 產業界 또는 研究機關등에서 이를 理由로 研究開發 分野에 投資를 기피할 우려가 있어 이는 결국 國家産業 전체의 발전을 阻害하는 結果를 초래하게 됨으로 研究開發 活動을 獎勵하고 研究開發 投資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營業秘密을 法的으로 適切하게 保護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最近 美國 등 先進工業國들의 技術開發 規制 움직임이 具體化(技術開發 規制法化) 되면서 供與技術의 法的保護를 강하게 要求하고 있는 傾向이다. 따라서 營業秘密 保護에 대한 法的 장치의 미흡할 경우 尖端技術의 제공을 기피하게 되어 우리의 先進産業化 추진에 막대한 阻害를 초래하게 됨으로 營業秘密 保護에 대한 立法措置를 통하여 이러한 對外的인 신뢰도를 改善함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尖端分野의 新技術 및 노하우의 移轉을 보다 促進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營業秘密을 法的으로 適切하게 保護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 1986년의 韓·美간 통상관련 知的財産權 합의 사항에 성실한 이행은 물론 GATT/UR Trips(貿易關聯 知的財産權 協商)에서 논의 되고 있는 營業秘密 保護制度의 採擇이 確실시 되고 있고 우리의 對外投資 또한 增加하고 있는 現實을 감안 할 때 우리의 營業秘密이 外國에서도 保護받기 위해서는 國際的인 保護 趨勢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最近 빈발하고 있는 産業스파이등의 反倫理的, 反文明的인 不正行爲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不利益 내지는 處罰을 통해 競爭의 法則을 바로 세우고 自力으로 技術을 發明하지 않고서는 企業이 競爭力을 確保할 수 없다는 “技術權, 企業權”을 產業界에 正립하기 위해서도 技術情報 등 노하우의 盜難을 방지하는 法的 裝置를 두어 法과 制度의 엄한 運營을 통해 또는 企業과 職場人の 價値觀을 통해 營業秘密이 適切히 保護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도용된 營業秘密에 의하여 生産·販賣된 商品이 市場에 流通될 경우 消費者가 진실로 원하는 商品에 대한 選擇이 어려워 善良한 消費者를 속이는 結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品質이 劣惡할 경우 불의

의 被害를 보게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특히 食品이나 醫藥品의 流通은 消費者의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나아가 機械類나 車輛, 船舶, 航空機 部品 등에서의 商品은 産業災害를 일으킬 危險까지도 내포하고 있음으로 이와같은 消費形態의 歪曲을 豫防하기 위해서 營業秘密을 法的으로 適切하게 保護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現行 營業秘密 保護에 관한 法的救濟制度의 미비점을 들 수 있는 바 우리의 現行法 체계하에서는 民法이든 商法이든간에 營業秘密 그 자체를 直接的으로 保護하기 위한 明文의 規定은 없다. 다만, 侵害者가 營業秘密 所有者와 僱傭關係등 契約關係에 있는 자가 契約上的 秘密維持義務를 위반하여 營業秘密을 侵害한 때에는 民法의 契約法上 債務不履行에 의한 損害賠償등을 請求 할 수 있을 뿐이고 侵害者가 營業秘密 所有者와 아무런 契約關係가 없는 第三者인 경우에는 民法上 不法行爲로 損害賠償 請求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契約違反 또는 不法行爲의 要件을 構成하지 못하는 侵害 行爲에 대하여는 구제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더욱 侵害行爲의 禁止 또는 豫防請求權등을 인정하기란 더 더욱 어려웠던 실정이다.

또한 刑法에 있어서도 營業秘密侵害行爲 그 자체를 犯罪行爲로 보아 直接的으로 處罰하는 規定이 없다. 다만, 企業의 從業員 자신이 保管, 管理하고 있는 營業秘密을 누설할 경우 業務上 橫領罪, 자신이 管理하고 있지 않은 營業秘密은 特殊竊盜罪에 해당하는 程度이고 산업스파이등 第三者가 營業秘密을 探知하는 경우에는 住居侵入罪 및 竊盜罪를 構成하는 것이 고작이다.

**4. 國外的 立法例와 우리의 立法推進**

가. 外國의 立法例

營業秘密保護에 관한 立法例를 살펴보면 英·美法系國家에서는 19세기초경 Common law에 의하여 判例를 中心으로 保護되어 오고 있던 중 美國이 1979년에 모델法인 統一 營業秘密保護法을 制定하여 現

在 32個 州에서 州法으로 採擇하여 施行하고 있고 獨逸, 日本 등 大陸法系 國家에서는 不正競爭防止法, 刑法, 民法, 不法行爲法 등 개별법으로 營業秘密을 保護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開發途上國家인 香港이나 말레이지아는 물론 南美的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社會主義 國家인 소련, 東歐圈 國家인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에서도 法的 保護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우리의 立法推進 經緯

우리나라에서 최근 실시한 營業秘密에 관한 設問 調査(韓國情報産業聯合會)에서 총 응답자의 93.6%가 營業秘密保護制度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이 法을 시급히 制定, 施行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5.2%, 1년 내지 2년내에 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25.8%를 차지함으로써 70.1%가 2년이내 制定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產業界에서의 이에 대한 認識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營業秘密에 대한 保護의 필요성도 크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特許廳에서는 이미 1988년 8월부터 學界, 法曹界등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營業秘密 保護制度 研究班을 설치, 운영하여 이에 대한 研究와 아울러 1989년, 1990년에 각각 한차례씩의 公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營業秘密保護에 대한 產業界에 상당한 공감대가 形成되기 시작하여 1990년 12월부터 營業秘密保護立法推進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동안 6차에 걸친 審議過程을 거쳐 1991년 4월말에 特許廳의 法案草案이 마련되었다. 特許廳은 이 草案을 가지고 產業界를 對象으로 5회에 걸친 설명회 및 토론회 등을 가진 바 있고 現재 關係部處 의견조회와 立法豫告중 에 있으며 앞으로 당정협의, 國務會議 審議등을 거쳐 1991년 9월 定期國會에 上程할 계획으로 立法을 推進하고 있다.

**5. 어떤 경우 營業秘密 侵害行爲가 되는가?**

營業秘密 侵害行爲를 民法上 不法行爲의 특수한

형태인 不正競爭行爲의 一種으로 보고 6가지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基本的인 侵害行爲類型은 다음 2가지이다.

① 절도, 사기,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營業秘密을 取得하는 行爲 또는 그 取得한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公開하는 行爲(立法草案 第11條 第1項 第1號, 不正取得行爲 등)

② 契約關係(雇傭關係, 라이선스契約 등) 등에 의하여 營業秘密을 秘密로서 維持하여야 할 義務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營業秘密의 保有者에게 損害를 가할 목적으로 그 營業秘密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行爲(立法草案 第11條 第1項 第4號, 秘密維持義務 違反行爲).

이상 2가지의 基本的인 侵害行爲 유형에 따르는 사후적 관여행위를 각각 2가지씩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不正取得行爲(第1號)와 秘密維持義務違反行爲(第4號)를 취득당시에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營業秘密을 取得, 使用, 公開하는 行爲를 각각 第2號, 第5號에 規定하고 있으며 不正取得行爲(第1號)와 秘密維持義務違反行爲(第4號)를 取得當時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취득후 알게 되거나 중대한 過失로 알지 못하고 당해 營業秘密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行爲를 각각 第3號, 第6號에 규정하고 있다.

**6. 營業秘密이 侵害되었을 경우 어떤 救濟 手段이 있는가?**

營業秘密이 侵害 되었을 境遇의 救濟手段으로서는 民法上 不法行爲에 대한 救濟手段인 損害賠償 請求權 이외에 侵害行爲 禁止 또는 豫防請求權, 營業秘密로 만들어진 物件의 廢棄, 除去 請求權, 營業秘密 保有者의 신용회복 請求權 등을 規定하고 있다.

또한 刑事處罰規定을 두어 기업의 任·職員 또는 任·職員이었던 자가 정당한 理由없이 그 기업의 營業秘密을 第三者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7. 企業은 營業秘密保護에 어떻게 對應해야 하는가?**

營業秘密保護에 관한 立法이 될 경우, 일단 營業秘密 侵害에 대한 확실한 法的 救濟手段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立法이 된다 해서 企業의 營業秘密이 자동적으로 保護되는 것이 아니고 企業 스스로가 자기의 營業秘密을 保護하기 위한 노력과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法은 營業秘密의 維持, 管理의 義務와 責任을 당해 營業秘密 保有者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營業秘密 保有者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이나 영업비밀 관리규정등을 만들어 사내에서의 秘密漏泄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은 물론 他社 즉, 외부로부터의 營業秘密 侵害를 받지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어대책도 아울러 마련하여 營業秘密 情報의 維持, 管理에 만전을 기여하여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취업규칙등의 制定, 施行**

기업의 任·職員의 신분으로 준수해야 할 就業規則이나 雇傭規則 등에 營業秘密保護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신규사원 채용시 이를 숙지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한 서약서등을 징구하는 등의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1) 營業秘密의 漏泄防止  
자기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知得한 營業秘密은 물론 기업체로부터 받은 특별과제의 수행과정에서 얻어진 營業秘密이나 자기업무와는 무관하나 전문 資料등의 정보에 의하여 알게된 營業秘密에 대하여서도 재직시는 물론 退職時에도 無斷漏泄하거나 競爭企業體에 流出하는 行爲를 禁止하는 등의 規則을 만들어 이의 이행을 채용시 雇傭契約등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競爭業種에의 轉職制限  
기업체의 任·職員이 재직시 知得한 營業秘密情報와 관련된 분야의 경쟁業種에 轉職을 하고자 할 경

우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轉職을 제한 할 수 있는 競業禁止業務를 부과할 수 있는 規則을 둘 수 있을 것이다.

(3) 競爭的 創業行爲(競爭企業과의 同業)禁止

기업체 任·職員이 재직시 知得한 營業祕密을 가지고 營業祕密保有業體보다 우위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競爭的 創業行爲 즉, 競爭企業과의 同業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規則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경우 기업의 任·職員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규칙은 사회질서(사회상규 공서양속 등)에 반하는 것으로서 民法 第103條, 第104條의 法理에 따라 당연 무효가 됨으로 과도하게 從業員의 基本權을 規制하는 規則을 만들어 職業選擇의 자유나 勞動의 권리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나. 技術導入契約 取扱規定의 制定, 施行

技術導入契約의 對象範圍, 導入技術의 水準, 技術導入料額, 契約期間, 契約期間滿了後의 제반 처리사항 등 기술도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칙사항 등을 규정화하고 이에 준하여 技術導入契約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약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다면, 계약기간 만료후까지 계속 營業祕密 維持를 義務化한다면, 契約範圍를 턱없이 넓힌다면, 개량된 발명, 고안까지도 導入技術의 범주로 인정한다면, 계약기간 만료후 특별한 사유없이도 재계약 체결이 가능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로얄티 支給要求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의 規定을 두어 무모하게 損害를 입거나 不當한 利益을 보게되는 폐단이 없도록 특별한 注意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다. 營業祕密의 申告制 및 補償制의 導入, 運營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 또는 창출된 營業祕密은 기업에 신고하여 기업의 營業祕密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營業祕密 申告制를 두어 運營한다.

신고된 營業祕密은 가칭 營業祕密 管理委員會 같은 기구를 두어 同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營業祕密

管理記錄簿에 올리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도 아울러 마련하여 영업비밀보호제도의 활발한 운영을 도모한다.

라. 營業祕密 管理規定의 制定, 施行

事業活動에 필요한 영업상의 祕密情報과 관련되는 모든 人員, 部署, 資材, 施設, 通信, 場所 등을 競爭企業 또는 비밀취급 비인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반의 豫防措置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즉, 각 기업은 營業祕密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한 營業祕密 管理規定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이다.

(1) 營業祕密 管理體制의 確立

營業祕密保護를 위한 管理體制를 確保하기 위하여 기업내의 營業祕密 管理業務總括部署(총무과, 서무과, 관리과 등)를 두는 한편 가칭 “營業祕密 管理委員會”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관장토록 한다.

- 營業祕密 管理制度를 研究, 發展
- 營業祕密 對象業務 및 그 분류기준의 설정
- 營業祕密情報의 保存期間 및 그 保存方法
- 營業祕密의 管理 및 廢棄方法
- 營業祕密 전반에 관한 企劃, 調整, 監督 및 統制 기타 維持管理에 관한 사항
- 營業祕密 유출 등 사건 발생시의 대책 마련 등

(2) 營業祕密의 管理方法

營業祕密 관리는 中央集中管理 또는 部, 課, 計 단위의 分散管理 등의 방법이 있으나 營業祕密情報의 이용면에서 보면 分散管理方法이 편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營業祕密 取扱者 등 認可

營業祕密保護의 責任과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營業祕密 取扱者와 責任者를 지정, 認可한다.

營業祕密 취급자, 책임자는 그 營業祕密 情報를 直接管理하는 부서의 담당자와 직상급자로 하는 등 최소한의 人員으로 제한하는 것이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4) 營業祕密 內容의 區分 및 等級의 決定

營業祕密의 內容이나 重要도에 따라 I급, II급, III급 및 對外祕密등 비밀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保安의 質을 強化하되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分類하고 과대하게 分類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5) 營業祕密의 保存年限 設定

영업비밀은 그 활용가치의 정도에 따라 보존기간을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그 保存期間은 최단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길게 잡아서 안될 것이다.

(6) 營業祕密의 保管容器

營業祕密의 保管容器는 휴대하기 어렵고 무거운 金庫 또는 二重 철제 캐비닛으로 하고 반드시 二重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保管容器의 표지는 외부에 祕密의 保管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7) 營業祕密 保管場所의 設定

營業祕密의 安全的 保管을 위하여 保管場所를 설정하여 外部出入者는 물론 사내 관계자외의 접근도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保管場所의 選定은 사무실의 위치, 보관함, 캐비닛, 금고 등에 유의하여 設定하여야 할 것이다.

(8) 營業祕密 管理記錄簿의 備置

營業祕密 管理記錄簿를 備置하여 영업비밀의 분실, 훼손, 거래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출납을 그때 그때 기록하여 영업비밀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9) 通信·保安

○ 陰語의 保安

전언통신 기타 通信手段에 의하여 수령한 음어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祕密文書인 경우에는 營業祕密 管理記錄簿에 記錄하여 管理하여야 할 것이다.

○ 國際通信文의 보안

國際通信文은 비밀의 분류기준을 國內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상향 분류할 필요가 있다.

○ 텔렉스, 國際電話 및 팩시밀리 등을 사용할 시에는 保安統制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情報資料가 營業祕密에 속할 경우에는 營業祕密管理記錄簿에 記錄하여 管理하여야 할 것이다.

(10) 施設 保安

○ 保護區域의 設定

祕密의 保護와 중요시설물을 保護하기 위하여 保護區域을 설정한다. 보호구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구분하되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非認可者 또는 部外者가 업무상 출입이 빈번한 區域의 설정을 피하여야 한다.

○ 保護區域의 출입자 통제

統制區域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구역 출입자 名簿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1) 營業祕密 關係者 이외의 者에 대한 管理

○ 關聯機關등에 대한 보안

관계기관·단체, 用役會社, 하청업체등에 영업비밀에 관한 祕密情報資料를 제공할 경우에는 營業祕密 표시는 물론 담당자의 營業祕密 준수동의서에 서명토록하는 조치등을 취하여 두면 유사시 法的效果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祕密管理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外來訪問客에 대한 保安

企業에 업무상 또는 弘報上 外來客이나 視察團이 자주 방문하게 된다. 이 중에는 경쟁기업체의 비밀탐지 의무를 띠고 온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비밀정보가 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래 訪問客에 대한 주의도 요망된다 할 것이다.

○ 사내 비밀취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보안

社內에서 통상 營業祕密業務와 무관한 직에 있는 자로부터 業務와 關聯하여 營業祕密에 관한 複寫, 複製, 閱覽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祕密管理記錄簿에 기록하고 祕密遵守 각서 등을 징구하여 보관하는 등 祕密管理에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2) 營業秘密管理에 관한 敎育

新入社員은 물론 在職者에게 營業비밀 관리규정에 대한 職務敎育을 실시하여 營業비밀에 관한 관리방법을 철저히 주지 시키는 물론 퇴직후에도 악의성 누설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基本인식을 갖도록 保安의 생활화를 몸에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3) 營業秘密 管理狀態의 點檢

營業秘密 관리규정에 의하여 營業秘密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點檢하여 비밀정보의 漏出을 사전에 豫防하여야 할 것이다.

(14) 營業秘密 誘出등 사고에 대한 措置

營業秘密의 누설, 秘密情報資料의 분실 보호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내의 불법침입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營業비밀관리책임자, 營業비밀 관리업무 총괄부서 및 營業秘密 管理委員會 등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社內措置는 물론 辯護士등에 의한 法的 구제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몇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임으로 각 기업은 企業마다의 특성에 알맞는 營業秘密保護에 관한 제반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各社 특성에 맞는 법적 情報管理의 구체적 方法을 설정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기술도입계약취급규정, 사내營業비밀의 신고제 및 보상제, 營業秘密 관리규정등에 基本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고 情報管理 수단으로서의 사원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社會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 함으로서 營業秘密 보유자의 권리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퇴직자의 競業제한 계약에 대해서는 競業의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를 제한의 기간이나, 장소적 범위, 제한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 대가의 유무 등에 대해서 채권자의 이익, 채무자의 불이익 및 社會的 利益(독점, 과점, 이에 따른 소비자 이해 등)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인바 企業主와 從業員 상호간의 이익을 비교衡量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맺음말

최근 技術革新의 현저한 진전, 경제사회 的 情報化 등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産業技術이나 賣買戰略 등 사업활동에 유용한 營業秘密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외국 제도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營業秘密의 부정취득행위 등 營業秘密에 관한 不正競爭 行爲에 대하여 禁止 및 豫防請求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하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現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營業秘密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 운용은 기업에서 직접하게 되는 특수한 법이므로 앞으로 企業을 經營하는 분이나 企業에 從事하는 분 즉, 産業界, 勞動界 할것 없이 이 법 운용에 실제로 직면한 모든 분야의 종사원이 모두 다 함께 우선 비교적 익숙하지 못한 營業秘密의 法的概念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法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확실히 이해하여 立法趣旨에 벗어난 권리 주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法の 테두리안에서 自社의 營業秘密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他社로부터 營業秘密 侵害訴訟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防禦戰略도 아울러 수집하여 任·職員에 대한 교육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各 企業은 기업특성에 맞는 법적 情報管理의 구체적 方法을 설정하기 위하여 雇傭契約등에 관한 취업규칙, 기술도입 취급규정, 사내 營業秘密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 운영 기타 비밀분류 등의 基本방침 등을 정한 營業秘密管理規定 등을 만들어 운용해야 할 것이고 情報管理 수단으로서의 사원계약 또는 就業規則 등은 社會질서(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 함으로서 營業秘密 保有者의 權利濫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점에 관한 구체적 지침 내지 判例研究 등을 위하여는 정부는 물론 學界, 法曹界, 産業界의 協助가 크게 필요할 것이다.